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10
----------	-------

발의연월일 : 2026. 4. 17.

발 의 자 : 임미애 · 김문수 · 송옥주
윤준병 · 이수진 · 이연희
임호선 · 전종덕 · 주철현
황정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하여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 등을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특정 어종의 암컷은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일본산 암컷 대게와 중국산 체장 미달 꽃게가 국내 시장에 유통된 사례가 있어 국내 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국내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물이 수입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된 체장 또는 체중에 해당하는 수산물 중 수입산으로 둔갑 우려가 있는 품목과 특정 어종의 암컷을 대상으로 포획 및 채취 금지 규정을 수입 수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국내 수산 자원을 보호하려

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 기준에 해당되는 수입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3.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7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산물은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생 략) <u><신 설></u></p> <p><u><신 설></u></p> <p>2. (생 략) ② · ③ (생 략)</p>	<p>제37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 기준에 해당되는 수입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p> <p>3.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p> <p>4. (현행 제2호와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